힐데스하임 천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 체결은 홍보관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을 위한 홍보관 방문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힐데스하임 천호 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02-423-454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1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1)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자(2018.08.11.이전부터 계속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가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hunho1.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강동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당해)	1순위(기타)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및 심사	계약체결
일 정	08월 21일(금)	08월 24일(월)	08월 25일(화)	08월 26일(수)	09월 01일(화)	09월 03일(목) ~09월 08일(화)	09월 11일(금) ~09월 15일(화)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 소	▪ 사업주체 홍보관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홍보관	당사 홍보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8323호(2020.08.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37-5번지 일원 /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1층~20층 2개동, 총 188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1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공급 55세대, 임대주택 32세대 제외)
[특별공급 3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총 세대수 대비 일반공급 및 조합공급 현황

주택형	52AT	59A	84A	84AP	84B	84C	84CP	108A	108AT	108BT	108BP	계
총 세대수	2	20	70	2	44	6	2	4	2	2	2	156
일반 공급	0	2	49	0	43	3	0	4	0	0	0	101
조합 공급	2	18	21	2	1	3	2	0	2	2	2	55

■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931	01	059.9777	59A	59.9777	19.7790	79.7567	62.2435	142.0002	25.1631	2	-	-	-	-	-	2	2
		02	084.9627	84A	84.9627	26.1747	111.1374	88.1723	199.3097	35.6453	49	4	4	8	1	17	32	-
		03	084.9914	84B	84.9914	26.1825	111.1739	88.2020	199.3759	35.6573	43	4	4	8	1	17	26	-
		04	084.9893	84C	84.9893	27.2141	112.2034	88.1999	200.4033	35.6564	3	-	-	-	-	-	3	-
		05	108.9568	108A	108.9568	33.4371	142.3939	113.0728	255.4667	45.7118	4	-	-	-	-	-	4	-
											101	8	8	16	2	34	67	2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공부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의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추후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공급사례의 발코니 확장 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입니다.

■ 공통사항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층구분	세대 수	동별 (라인)	분양가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020.11.30)	2차(10%) (2021.02.26)	3차(10%) (2021.05.31)	4차(10%) (2021.10.29)	5차(10%) (2022.01.28)	6차(10%) (2022.04.29)	입주지정일
59.9777	59A	2	2	1	101동 6호	484,207,100	194,492,900	678,700,000	135,74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67,870,000	135,740,000
			2	1	102동 6호	478,846,360	192,353,640	671,200,000	134,240,000	67,120,000	67,120,000	67,120,000	67,120,000	67,120,000	67,120,000	134,240,000
84.9627	84A	49	2	2	101동, 102동 3호	609,383,860	244,716,140	854,100,000	170,820,000	85,410,000	85,410,000	85,410,000	85,410,000	85,410,000	85,410,000	170,820,000
			2	1	101동 4호	612,447,140	246,052,860	858,500,000	171,70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171,700,000
			2	1	102동 4호	603,535,780	242,464,220	846,000,000	169,2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169,200,000
			3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592,883,920	238,116,080	831,000,000	166,2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83,100,000	166,200,000
			3	1	102동 4호	583,972,560	234,527,440	818,500,000	163,70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81,850,000	163,700,000
			4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596,016,820	239,383,180	835,400,000	167,08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167,080,000
			4	1	102동 4호	587,105,460	235,794,540	822,900,000	164,58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82,290,000	164,580,000
			5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598,662,380	240,537,620	839,200,000	167,84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167,840,000
			5	1	102동 4호	589,751,020	236,948,980	826,700,000	165,340,000	82,670,000	82,670,000	82,670,000	82,670,000	82,670,000	82,670,000	165,340,000
			6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600,890,220	241,409,780	842,300,000	168,46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84,230,000	168,460,000
			6	1	102동 4호	591,978,860	237,821,140	829,800,000	165,96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82,980,000	165,960,000
			7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603,535,780	242,464,220	846,000,000	169,2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169,200,000
			7	1	102동 4호	594,624,420	238,875,580	833,500,000	166,700,000	83,350,000	83,350,000	83,350,000	83,350,000	83,350,000	83,350,000	166,700,000
			8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605,763,620	243,336,380	849,100,000	169,82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169,820,000
			8	1	102동 4호	596,852,260	239,847,740	836,700,000	167,34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167,340,000
			9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608,478,800	244,421,200	852,900,000	170,58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170,580,000
			9	1	102동 4호	599,080,100	240,719,900	839,800,000	167,96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167,960,000
			10	3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610,706,640	245,293,360	856,000,000	171,2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171,200,000
			10	1	102동 4호	601,795,280	241,704,720	843,500,000	168,70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168,700,000
			11~13	9	101동 3호, 4호 102동 3호	611,124,360	245,475,640	856,600,000	171,32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171,320,000
			11~13	3	102동 4호	602,213,000	241,887,000	844,100,000	168,82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168,820,000
			14	1	102동 4호	603,535,780	242,464,220	846,000,000	169,2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169,200,000
84.9914	84B	43	2	1	101동 1호	618,712,940	248,487,060	867,200,000	173,440,000	86,720,000	86,720,000	86,720,000	86,720,000	86,720,000	86,720,000	173,440,000
			2	1	101동 2호	615,580,040	247,319,960	862,900,000	172,58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172,580,000
			2	1	102동 1호	610,219,300	245,180,700	855,400,000	171,08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171,080,000
			2	1	102동 2호	607,156,020	243,843,980	851,000,000	170,2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170,200,000
			3	1	101동 1호	599,985,160	241,014,840	841,000,000	168,2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168,200,000
			3	1	102동 1호	596,852,260	231,647,740	828,500,000	165,70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165,700,000
			3	1	101동 2호	591,073,800	245,626,200	836,700,000	167,34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167,340,000
			3	1	102동 2호	588,428,240	236,371,760	824,800,000	164,960,000	82,480,000	82,480,000	82,480,000	82,480,000	82,480,000	82,480,000	164,960,000
			4	1	101동 1호	603,118,060	242,281,940	845,400,000	169,08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84,540,000	169,080,000
			4	1	102동 1호	599,985,160	232,914,840	832,900,000	166,580,000	83,290,000	83,290,000	83,290,000	83,290,000	83,290,000	83,290,000	166,580,000
			4	1	101동 2호	594,206,700	246,793,300	841,000,000	168,2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84,100,000	168,200,000
			4	1	102동 2호	591,073,800	237,426,200	828,500,000	165,70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82,850,000	165,700,000
			5	1	101동 1호	605,763,620	243,336,380	849,100,000	169,82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169,820,000
			5	1	102동 1호	602,213,000	234,487,000	836,700,000	167,34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83,670,000	167,340,000
			5	1	101동 2호	596,852,260	247,247,740	844,100,000	168,82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84,410,000	168,820,000
			5	1	102동 2호	593,301,640	238,398,360	831,700,000	166,34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83,170,000	166,340,000
			6	1	101동 1호	607,991,460	244,308,540	852,300,000	170,46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170,460,000
			6	1	102동 1호	604,928,180	234,871,820	839,800,000	167,96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83,980,000	167,960,000
			6	1	101동 2호	599,080,100	248,819,900	847,900,000	169,58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169,580,000
			6	1	102동 2호	596,016,820	239,383,180	835,400,000	167,08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83,540,000	167,080,000

			7	1	101동 1호	610,706,640	245,293,360	856,000,000	171,2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171,200,000
			7	1	102동 1호	607,156,020	236,343,980	843,500,000	168,70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168,700,000
			7	1	101동 2호	601,795,280	249,204,720	851,000,000	170,2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170,200,000
			7	1	102동 2호	598,662,380	240,537,620	839,200,000	167,84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167,840,000
			8	1	101동 1호	612,934,480	246,165,520	859,100,000	171,820,000	85,910,000	85,910,000	85,910,000	85,910,000	85,910,000	85,910,000	85,910,000	171,820,000
			8	1	102동 1호	610,219,300	236,380,700	846,600,000	169,32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84,660,000	169,320,000
			8	1	101동 2호	604,023,120	251,376,880	855,400,000	171,08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85,540,000	171,080,000
			8	1	102동 2호	601,307,940	241,592,060	842,900,000	168,580,000	84,290,000	84,290,000	84,290,000	84,290,000	84,290,000	84,290,000	84,290,000	168,580,000
			9	1	101동 1호	615,580,040	247,319,960	862,900,000	172,58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172,580,000
			9	1	102동 1호	612,447,140	237,352,860	849,800,000	169,96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169,960,000
			9	1	101동 2호	606,250,960	252,249,040	858,500,000	171,70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85,850,000	171,700,000
			9	1	102동 2호	603,535,780	242,464,220	846,000,000	169,2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169,200,000
			10	1	101동 1호	617,807,880	248,192,120	866,000,000	173,2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86,600,000	173,200,000
			10	1	102동 1호	615,162,320	238,337,680	853,500,000	170,70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170,700,000
			10	1	101동 2호	608,896,520	253,403,480	862,300,000	172,46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86,230,000	172,460,000
			10	1	102동 2호	605,763,620	243,336,380	849,100,000	169,82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84,910,000	169,820,000
			11~13	3	101동 1호	618,225,600	248,374,400	866,600,000	173,32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173,320,000
			11~13	3	101동 2호	615,580,040	247,319,960	862,900,000	172,58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86,290,000	172,580,000
			11	1	102동 2호	606,250,960	243,549,040	849,800,000	169,96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84,980,000	169,960,000
84.9893	84C	3	15	1	102동 2호	611,124,360	245,475,640	856,600,000	171,32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85,660,000	171,320,000
			17	1	102동 2호	614,257,260	246,742,740	861,000,000	172,2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86,100,000	172,200,000
			19	1	101동 2호	626,301,520	251,598,480	877,900,000	175,58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87,790,000	175,580,000
108.9568	108A	4	13	1	102동 2호	666,333,020	267,766,980	934,100,000	186,820,000	93,410,000	93,410,000	93,410,000	93,410,000	93,410,000	93,410,000	93,410,000	186,820,000
			14	1	102동 2호	668,143,140	268,456,860	936,600,000	187,32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93,660,000	187,320,000
			15	1	101동 2호	679,282,340	272,917,660	952,200,000	190,44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95,220,000	190,440,000
			16	1	101동 2호	681,510,180	273,789,820	955,300,000	191,060,000	95,530,000	95,530,000	95,530,000	95,530,000	95,530,000	95,530,000	95,530,000	191,060,000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공동주택, 옵션 등)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당첨 부적격자에 대한 업무는 시공사가 대행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84A	84B	84C	108A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등(국가보훈대상자 포함)		-	1	1	-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1	-	-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	-	2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장애인		-	1	1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50%)		-	2	2	-	-	4
	서울특별시 2년미만, 인천, 경기 거주(50%)		-	2	2	-	-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	6	6	-	-	12
		일반공급(25%)	-	2	2	-	-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1	-	-	2
합 계			-	17	17	-	-	3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상기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8.08.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54조(과거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등에서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 으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봄.

<table>
<tr><td></td><td>-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우선공급에도 불구하고, 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h>경기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분양가격 9억원 이하) : 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분양가격 9억원 이하) : 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자를 포함함.)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분양가격 9억원 이하)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8.08.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분양가격 *9*억원 이하*) : 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2년 이상(2018.08.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 및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시 2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당해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청약 홈(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당해),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단 2순위로 청약 가능)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1. 지역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당해)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구 분	순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table>
<tr><td rowspan="5">민영
주택</td><td rowspan="3">1순위</td><td>85㎡이하</td><td>•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100%가점제)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td><td rowspan="5">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
인천시거주</td></tr>
<tr><td>85㎡초과</td><td>•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부양가족 산정시에서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td></tr>
<tr><td>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td><td>•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td></tr>
<tr><td rowspan="2">2순위</td><td>전 주택형</td><td>•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td></tr>
<tr><td>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td></tr>
</ta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8.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민영주택 청약예치금 기준금액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별표2〕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신 청 자 격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 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한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된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청약 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 2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된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전 반드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요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공급신청자(본인)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신청일정 및 장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020.08.21(금)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홍보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홍보관
일반공급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2020.08.24(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0.08.25(화) 08:00~17:30		
	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020.08.26(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시 거주신청자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서류검수 일정

■ 당첨자발표 및 서류검수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검수 일정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9.01.(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기간 - 2020.09.03.(목)~2020.09.08.(화) (10:00~16:00) • 장소 - 당사 홍보관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54 한라빌딩 5층 홍보관_ 9호선 송파나루역 1번출구)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당사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chunho1.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9.01.(화) ~ 2020.09.10.(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9.01.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 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무주택 서약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무주택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O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 확약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추첨제)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홍보관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여부를 알수 있게 출력)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장의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O	군복무기간(10년이상)이 명시된 군복무 확인서	본인	10년이상 장기 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산)증명서	계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계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계약자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8세이상 세대원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수신 문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8세이상 세대원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운용지침 별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청약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단독세대일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피부양직계비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국토교통부「주택청약자격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직계비속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1.)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건물등기부 등본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금융결제원 발급)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O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당첨자(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O		위임장	당첨자(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계약 체결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당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 해당직장 • 세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홍보관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예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Ⅵ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0.09.11.(금) ~ 2020.09.15.(화) 3일간, 10:00~1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54 5층 힐데스하임 천호 홍보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o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기재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o		계약금 입금증	-	■ 홍보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o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o	위임장	-	■ 홍보관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 으로 계약을 채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 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접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 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분양대금연체, 계약부정행위등)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분양대금 납부계좌	NH농협은행	301- 0263- 5614- 71	천호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원건설 / 주택도시보증공사정비사업

※ 분양대금 중 계약금(20%)는 지정된 납부일자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홍보관에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홍보관)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2년 07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전쟁,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공용)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등) 및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및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수도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정액)	잔금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발코니 확장 공사	15,134,000	1,960,000	17,674,000
	주방가구 증가 및 거실, 주방 우물천정 변경	4,500,000		
	합계	19,634,000		
84A	발코니 확장 공사	18,205,000	2,520,000	22,685,000
	주방가구 증가 및 거실, 주방 우물천정 변경	7,000,000		
	합계	25,205,000		
84B	발코니 확장 공사	18,173,000	2,520,000	22,653,000
	주방가구 증가 및 거실, 주방 우물천정 변경	7,000,000		
	합계	25,173,000		
84C	발코니 확장 공사	18,041,000	2,500,000	22,541,000
	주방가구 증가 및 거실, 주방 우물천정 변경	7,000,000		
	합계	25,041,000		
108A	발코니 확장 공사	19,534,000	2,720,000	24,514,000
	주방가구 증가 및 거실, 주방 우물천정 변경	7,700,000		
	합계	27,234,000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NH농협은행	301-0263-5614-71	천호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원건설 / 주택도시보증공사정비사업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확장공사(추가 선택품목 등 포함)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동일함.
※. 지정된 발코니확장공사(추가 선택품목 등 포함) 대금은 잔금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무상 제공 품목은 주택형에 따라 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확장을 전제로 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급, 동가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 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 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수전,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대피공간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또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되었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분양홍보관 내에 비치된 확장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문의 바람.
-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발코니에는 일부 천장 마감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의 바닥배수구에 따른 천장마감 길이는 연장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후 미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하부층의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미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발코니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미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미확장세대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 이중창(내부는 22mm 일면 로이복층유리, 외부는 22mm 일반복층유리)이 설치되며, 미확장부위의 안방발코니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고, 대피공간을 포함한 발코니는 22mm복층유리 단창이 설치예정임(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홍보관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 발코니 미확장 선택시, 발코니 내측에 이중창(내부는 22mm 일면 로이복층유리, 외부는 22mm 일반복층유리)이 설치되며, 외측에 난간이 설치됨. 발코니 미확장시 발코니 확장 선택시와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홍보관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 선반 및 인테리어 패키지 옵션 품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제공 품목	미선택시 사양 및 제공여부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인테리어및 시스템가구 패키지	59A	주방상판, 화장실 젠다이(엔지니어드 스톤)	MMA(아크릴계 인조대리석)	8,500,000	10%	90%
		주방가전 (오븐)	미제공			
		강화석(현관 디딤석)	미제공			
		붙박이장(침실2)	미제공			
		시스템선반(다용도실)	미제공			
		거실아트월(이태리타일)	벽지마감			
		비데(부부욕실)	미제공			
		전동빨래건조대	미제공			
		콘센트(주니스)	일반 콘센트			
	84A	주방상판, 화장실 젠다이(엔지니어드 스톤)	MMA(아크릴계 인조대리석)	11,000,000		
		주방가전 (오븐)	미제공			
		강화석(현관 디딤석)	미제공			
		붙박이장(침실2)	미제공			
		시스템선반(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다용도실)	미제공			
		거실아트월(이태리타일)	벽지마감			
		비데(부부욕실)	미제공			
		전동빨래건조대	미제공			
		콘센트(주니스)	일반 콘센트			
	84B,84C	주방상판, 화장실 젠다이(엔지니어드 스톤)	MMA(아크릴계 인조대리석)	11,500,000		
		주방가전 (오븐)	미제공			
		강화석(현관 디딤석)	미제공			
		붙박이장(침실2)	미제공			
		시스템선반(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미제공			
		파우더장(침실1)	미제공			
		거실아트월(이태리타일)	벽지마감			
		비데(부부욕실)	미제공			
		전동빨래건조대	미제공			
		콘센트(주니스)	일반 콘센트			
	108A	주방가전 (오븐)	미제공	13,000,000		
		주방가전 (오븐)	미제공			
		강화석(현관 디딤석)	미제공			
		붙박이장(침실2)	미제공			

		시스템선반(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미제공		
		파우더장(침실1)	미제공		
		거실아트월(이태리타일)	벽지마감		
		비데(부부욕실)	미제공		
		전동빨래건조대	미제공		
		콘센트(주니스)	일반 콘센트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가구의 설치 모양 또는 설치위치는 각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선택품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입(주택형)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지정일
수입 주방가구(놀테)	59A	수입(Nolte, 독일)	7,000,000	10%	90%
	84A		8,500,000		
	84B		8,500,000		
	84C		8,900,000		
	108A		8,700,000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가구의 설치 모양 또는 설치위치는 각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선택품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입(주택형)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지정일
인덕션	전타입	삼성(NZ63N5300CK)	950,000	10%	90%
빌트인 냉장고(TBI, 650L)	전타입	삼성(BRS655140SR)	6,800,000		
빌트인 냉장고(TBI, 665L)	전타입	삼성(BRS665040SR)	5,7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타입	삼성(RQ22K5R01EC)	1,800,000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귀, 품절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에어컨 선택품목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	옵션1(실내기 2대)	거실, 침실1	LG전자 또는 삼성전자 제품 ※ 추후 계약시 안내 예정	3,200,000	10%	90%
	옵션2(실내기 3대)	거실, 침실1, 침실2		5,000,000		
84A, 84B, 84C	옵션3(실내기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000,000		
	옵션1(실내기 2대)	거실, 침실1		3,300,000		
	옵션2(실내기 3대)	거실, 침실1, 침실2		5,100,000		
	옵션3(실내기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 3		6,200,000		
108A	옵션1(실내기 2대)	거실, 침실1		3,400,000		
	옵션2(실내기 3대)	거실, 침실1, 침실2		5,100,000		
	옵션3(실내기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6,200,000		
	옵션4(실내기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7,800,000		

※ 추가 선택품목은 선택 옵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납부조건 및 납부일정 등은 분양홍보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천장형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천장형 에어컨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천장형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장형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천장형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천장형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냉배배관은 총 2개소(안방, 거실)에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에어컨 개별시공시,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다수의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고,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적용될 천장형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음(관련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농협은행	301- 0201- 6373- 81	㈜원건설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제안된 사항 외의 위치별, 실별 선택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해당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사유로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 중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 사항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적용품목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져, 천장몰딩 및 커텐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인덕션 옵션 선택시 3구 가스쿡탑은 설치되지 않으며 옵션 미선택시에는 3구 가스쿡탑(1개소)이 설치됨.
- 빌트인 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됨.
- 인덕션 옵션 선택시 전기식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며, 가스렌지용 가스배관은 캡처리로 마감됨.
- 일부세대는 옵션선택에 따라 간섭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Ⅷ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일반 공통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3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 및 설계의 변경 등으로 계약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건축법에서 정한 오차 이내의 변경사항은 정산하지 않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후 '조합'이라 함)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권리를 위임함
-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유의사항 내용을 매수자에게 인지시킨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제3자가 사업주체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봄.

■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위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착오기재 소명 여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착오기재를 소명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등)
• 각종 홍보물은 2018년 12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최종 시공됨.
• 각종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및 단위세대의 이미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 되었음.
• 본 계획안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공급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 면적 및 구조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과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입주자는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 일체의 비주거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전실 및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 공용부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상품개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본 주택의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시공 시 마감 및 단열재 두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구 설치시 반드시 실측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설비공간 등 각종 공용부 면적 등은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이나 인허가 과정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로고 등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계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설물 중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설물 중 입주 개시일로부터 필요기간동안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 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및 주변 현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은 현장여건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해 규모 및 용도, 내부 구획, 내·외부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계약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착공 후 구조설계관련 도서의 내용은 불합리한 설계나 표기의 오류, 오기, 현장여건(평판재하시험), 측량결과, 성능개선 및 품질을 제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설계,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준공도서, 공사 시방서(사용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순으로 정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자치구 건축조례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이 없이 조합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2013년 10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완료 및 2020년 4월 9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주변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천호1구역, 천호3구역 신축예정)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 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CG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지, 소공원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익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시행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익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세대 공용 엘리베이터로 101동 1호용 엘리베이터 1대, 2/3/4호용 엘리베이터 1대, 5/6호용 엘리베이터 1대, 102동 1호용 엘리베이터 1대, 2/3/4호용 엘리베이터 1대, 5/6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 5호(임대)와 6호(분양)는 임대와 분양이 혼합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고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 호수별 최고층수(101동 - 1호 : 13층, 2호~4호 : 20층, 5호 : 18층, 6호 : 11층 / 102동 - 1호 : 11층, 2호 : 18층, 3호~4호 : 20층, 5호 : 18층, 6호 : 11층)는 상이하며 입주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천호2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지 동측의 공공보행통로와 단지 남,서,북측의 전면공지, 서측의 쌈지형공지는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이와 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고저차로 인해 계단, 경사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포장, 조경, 레벨, 자재, 위치 등은 인허가, 법규의 변경, 안정성확보,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해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지하 4층 세대창고는 습기로 인한 결로, 곰팡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습도조절 등의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4층에 계획되어 있는 세대창고는 세대별, 라인별 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규격, 수량,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의 배정위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후 배정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계약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각 동별 3호라인 필로티에 1개소씩 설치되며,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는 라인은 이동 동선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집적소는 아파트와 단지내상가의 입점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에 단지 주출입구(1개소, 차량 및 보행 출입) 및 비상차량 출입구, 남측에 비상차량 출입구가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소음 및 생활환경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내 조경,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대, 자전거거치대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 주차장 환기와 채광을 위한 환기구, 채광창 구조물 및 소방재연 관련 구조물 등이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단지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D/A,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시설물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쓰레기 집적소, D/A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시선간섭 및 미관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치계획을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접근로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하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 별로 상이합니다.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통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채광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일부세대에서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당 아파트 시공사 및 해당관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법적의무시설로서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에 계획되는 경로당에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특성상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일부 저층부 세대에서는 소음 및 불빛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높이차에 의해 일부 조경석 또는 옹벽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보차도 경계석, 조경용 경계석 등은 비상차량, 비상동선 등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도로와의 단차가 없을 수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시설,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출입구 등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접세대 및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옥상부 및 단지내부에 통신사 중계기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인접세대는 이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옥탑에는 무동력환기팬, 정화조배기팬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들이 다수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 출입구 설치는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 상부에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향후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미관, 소음 등의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담장은 인허가 관련기간 및 설계 계획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불가할수있으며, 커뮤니티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통제장치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된 난간의 형태 및 마감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과 인접한 외부공간 및 세대에서는 시설의 냉·난방, 배기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근 도로와의 단지 내의 단차로 인해 조경석, 옹벽 또는 사면이 계획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지하1층~지하4층 2.3m, 지하1층 일부구간 2.7m으로 택배차량 출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경사진 구간에 주차면, 주차통행로가 형성됩니다.
• 주차차단기는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각 1개소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동선, 주차대수 등은 주민편의, 주차대수 추가확보, 부대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동출입구 및 지하홀의 층고는 위치별로 상이하며 이로 인한 천장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천장 마감은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데크 시공시 구조기능과 관계없는 데크의 구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동출입구에는 자동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획된 법정주차 이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중주차 공간이 제공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분쟁, 안전사고 등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으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 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창,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과 인접한 외부공간 및 세대에서는 시설의 냉·난방, 배기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에는 정화조가 매설되며 이에 따른 배기휀 등의 시설이 1동 1, 2호라인 사이의 옥탑상부에 설치되므로 도면상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트렌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배수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위치, 재질 및 사이즈 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내부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과 모든 동 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대지형태 및 주동배치에 따라 각 주동별로 인접한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 이므로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주차공간 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 상부에 입주민 및 공공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기타사항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하역장, 차량동선 등이 지하1층에 계획되어있어 혼잡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본 계획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경비실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준공 시 변경될 수 있고, 동일 평형이라도 타입별로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홍보물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천장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 고시지역이며, 향후 세대별 위치에 따라 난방효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 방식이 적용되어 다용도실 내 상부에 전열교환기가 노출형으로 설치되며 후렉시블호스 등 관련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전열교환기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 선반 및 가전사이즈에 따라 사용에 제약이 있거나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전열교환기는 세탁기 상부에 설치되므로, 필터 교체 등을 위해 제품 사양에 따라서 세탁기와 건조기 직렬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져는 거실과 각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쿡탑 옵션 선택시 가스관련 시설물은 기본 세대와 동일하게 시공 됩니다. (주방 가스 공급관 ~ 가스 차단기 설치)
-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의 깊이는 약 70cm로 그이상의 깊이를 가진 냉장고를 설치할 경우 냉장고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에어컨 미선택시 거실과 침실1에 한하여 냉매배관이 기본으로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해당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 방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다용도실 및 안방 발코니, 대피공간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내 전기식 세탁건조기 배치가 가능하도록 예상되는 곳에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배치방식, 가전 크기의 차이 및 일부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건조기 설치가 불가한 경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욕실 바닥 레벨(단차)은 배수를 위한 구배 시공으로 인해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가구도어 (현관장, 장식장, 펜트리도어, 드레스룸도어 등) 사용시 발,손 등의 찍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고, 욕실천정 내부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팬트리 및 드레스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로 제어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인근 침실 혹은 거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 시공됩니다.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하부 걸레받이 및 상부 몰딩의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주방 우물천정은 세대 상부 배관위치에 따라 위치, 크기가 조정되거나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연석 및 타일은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욕실 바닥에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세면기, 양변기 하부에는 제외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가압 방식의 적용 및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의 적용으로 인해 동작에 따른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은 층하배관 기준으로 설치되며 일부세대 욕실은 하부세대 침실과의 간섭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상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동일설비 설치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전면에 설치되는 거실과 침실창호는 난간이 별도 설치되지 않는 분할창이 시공되며, 그 외의 창호는 일반창호로 시공되며 위치 및 높이에 따라 난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설치되는 분할창은, 안전상의 이유로 하부창의 개폐가 불가합니다.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됩니다.
- 발코니(혹은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홍보카탈로그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현관문 개폐 시 엘리베이터 홀, 복도 등 공용홀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각 세대의 공용홀은 너비, 면적, 마감재 적용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홀 계획에 따라 엘리베이터 스위치 주변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설치되는 창호는 난간이 별도 설치되지 않는 분할창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하부창의 개폐가 불가합니다.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은 세대 침실 벽체(방문이 닫히는 구간)에, 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며 공사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 내 시스템 선반의 설치위치는 시공시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접이식 시스템가구 적용시 일부 가전과의 간섭으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입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샤프트나, 계단실에 인접한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사이즈 및 위치는 홍보관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 다락방세대의 다락방은 바닥 난방설비 및 수전(외부테라스 포함)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를 청약,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 세대 층고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락방세대의 다락방 창호 및 문의 크기, 형태 및 유리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테라스 출입구간 창호의 하부에 턱, 상부에 캐노피가 시공됩니다.
• 각 세대 다락방은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임에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유화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락 외부공간에는 무동력환기팬, 정화조배기팬,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락방의 지붕은 경사지붕의 형태이며, 빗물차단을 위한 처마가 돌출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내부의 높이가 다르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락방이 있는 세대내에는 다락방 출입을 위한 계단이 설치되며, 계단 이용에 의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락방이 있는 세대의 계단의 형태, 크기, 디테일, 수납개구부의 위치 등은 현장여건, 공사세부계획 등의 사유로 분양공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경사지붕에는 태양광 관련 시설이 설치되며 이로인한 눈부심, 미관저하, 유지관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락방 등 외부공간과 출입이 발생할 수 있는 세대는 시공시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창호의 크기, 형태, 난간유무,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락방 외부공간 활용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용부의 유지관리 등의 사유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테라스의 바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동 구조물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조망, 미관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락방내의 모든 창호를 출입의 용도로 이용하며 초래되는 불편함(창호 형식, 높이, 너비 등)은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다락방은 공용부인 옥상테라스에 위치하며, 세대와 실내에서 연결되므로 다락방의 방범 및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계획되어있는 의장용 구조물의 위치에따라 일부 최상층 다락방세대의 조망, 조명에 의한 눈부심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세대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세대
• 단지내 2층세대는(임대세대 제외) 테라스가 설치되며, 테라스의 경우는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구조로 추후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2층 테라스세대에는 테라스외부에 유리난간이 설치됩니다.
• 2층 세대 중 일부 세대(101동 206호, 102동 206호)는 테라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테라스는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부 2층세대 및 최상층세대가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타 입주자들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세대는 테라스로 지정된 구간 외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점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상부세대 낙하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테라스 상부세대는 테라스세대의 거주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으로 인해 빛 간섭, 소음, 매연,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다락방 등 외부공간과 출입이 발생할 수 있는 세대는 시공시 사용성 개선 등의 사유로 창호의 크기, 형태, 난간유무,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테라스는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임에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테라스(옥외)출입여부에 따라 창호, 골조턱, 걸레받이 위치 및 사이즈가 일부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마감자재,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가 있는 경우 내부 발코니 창호에 세대간 벽체 및 난간 설치 범위는 세대의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테라스가 형성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선홈통 배관, 배수트렌치 등에 등이 매립 또는 노출 시공될 계획이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의 바닥은 배수를 위하여 경사시공되며, 배수관련 설비가 설치됩니다.
• 주택형, 세대위치에 따라 레벨차이로 인하여 테라스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 세대의 상부에는 별도의 지붕이 설치되지 않으며 낙하물,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층 및 최상층 세대의 테라스 출입 PL창호는 안전상의 이유로 잠금손잡이 대신 크레센트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은 지하주차장 램프 하부에 위치하며, 램프 이용에 따른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 장애등,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방음벽,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거치대,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행자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공용부에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또는 관련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다락 상부에 태양광 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전자파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와 함께 대지지분은 구분되어 있으나 향후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차로, 계단실, 조경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유권, 일방적인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하주차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과 인접한 동에서는 근린생활 주차공간에 대해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상가 수분양자 혹은 이용객의 단지내 진입이 불가피하며, 향후 분쟁발생시 입주민과 상가 수분양자가 관리규약에의해 분쟁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배기시설등은 단지외부, 필로티, 지붕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 출입구 및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근린생활시설 전후측면의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에 비치된 도면을 참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하역장, 차량동선 등이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면하지 않아 인접도로가 혼잡할 수 있음을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충분히 이를 숙지하시고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의 층고, 천장고, 창호높이 등은 상이하며, 본공사시 상가 진입레벨 및 외부여건에 의해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아파트 입주자 간의 출입구를 분리하였으나, 동일 대지 내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차구획, 주차동선은 추후 입주자 편의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등

• 1, 2동 1,4호라인 인근 지하공간에 주차램프, 전기실, 발전기실, 열교환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관련기기에 의한 진동,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3~4층 2,3호라인 지하공간에 정화조가 설치되며 이로인한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출입구, 상가 및 각종시설물,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 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됩니다)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계획되어있는 의장용 구조물은 본공사 시 외관개선 및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형태,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 입주자 모집 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101동 필로티내에 어린이집, 경로당이 배치되며, 102동 필로티내에는 작은도서관이 배치 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101동 지하에 배치되며, 주민운동시설은 102동 지하에 배치 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계약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토지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또는 본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일조량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 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체함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본 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 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다로그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표현 및 각종시설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라며,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 관리금을 부과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시 유의 바람.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사전방문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분양 이후 미 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자체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를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함.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계약자가 합의하여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계약시 주택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잔금 등의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 및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기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업무 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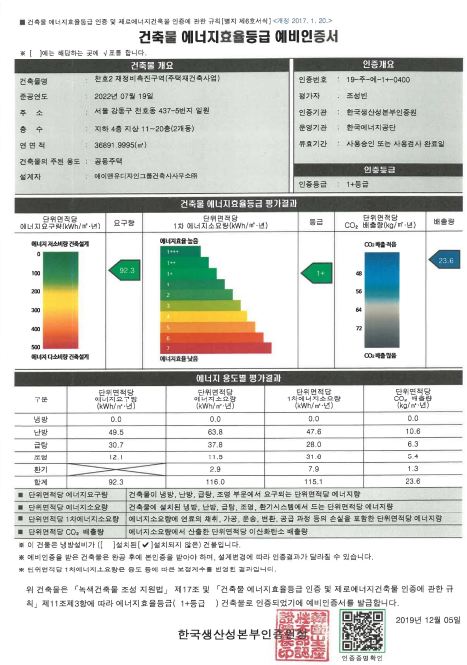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입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목업세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선정하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의거)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 부대시설 운영방식 결정, 운용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주관하며 입주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단지 내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은 임대인 및 관리주체로부터 권리를 부여 받은 자가 운영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입주전(입주청소 시)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세대별 분양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민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등은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 및 입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이 시공되며, 이에 따라 이와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부대시설, 경비실, 기타시설물(D/A, 주차장출입구 등)의 외벽마감은 석재 / 석재뿜칠 /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구조계획 본 공사시 법적 기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 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대기전력차단장치(콘센트,스위치 등) 및 LED조명기구 적용 비율은 인허가 사항에 따라 적용 예정입니다.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됨. (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강동구청의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이 입주자 모집 시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색채, 재질,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 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 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장애 표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시 공동주택 이름의 우리말 표기운동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고유지명이나 지역특성의 우리말 이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보증서발급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계획
	방습층 설치 (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계획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미적용	미적용 사유 :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 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 용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바목)	적 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 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 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평가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8,530,800,000원	제06812020- 101- 0000600호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완료)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택분양보증약관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갑(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갑(매도인)”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 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표준사업약정에 따른 사항

①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관련 표준사업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채권(조합원 및 일반분양 수입금을 포함합니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건축공사 감리	전기공사 감리	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
회사명	893,996,400	165,000,000	220,000,000
감리금액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유원이앤에프주식회사	유원이앤에프주식회사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 사 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21, 201호(천호동, 현경빌딩)	244171-0010905
시공회사	㈜원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북문로2가)	150111-0015889

▣ 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54 5층(힐데스하임 천호) (본 홍보관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chunho1.kr

▣ 분양문의 : ☎ 02- 423- 454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홍보관 또는 시공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